#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7. 21.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6월 30일
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8년 7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2008. 7. 14 제273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Ⅱ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이장길 기획관리국장)

## 가. 제안이유

○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개정(2007.4.12.)으로 '실업계고등학교' 명칭이 "전문계고등학교"로 변경되고, 「특수교육진흥법」이 폐지(2007.5.25.) 되고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이 제정 시행(2008.5.26.)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「사립학교법」 인용조항을 추가함. (안 제1조)
- 「특수교육진흥법」이 폐지되고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(안 제2조제2호)
-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변경(안 제4조제3호)

## Ⅲ. 검토보고 요지

#### (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)

- 동 개정조례안은
- 관련법령의 개정·폐지·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  - · 「초중등교육법시행령<sup>3)</sup>」이 2007년 4월 12일 개정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 → 전문계고등학교로 명칭 변경
  - · 종전 적용법령인 「특수교육진흥법」이 2007년 5월 25일 폐지되고 종전의 법령을 보완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을 2007년 5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.
    - ※ 제정법령 시행(공포후 1년후인 2008.5.26부터 시행)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"실업계고등학교"를 인용한 경우에는 "전문계고등학교"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<sup>3)</sup>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

부칙 <제20003호, 2007.4.12>

- 다만,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개정할시 에는 시행시기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V. 토론요지: "생략"
- 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W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- 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 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 - O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충청북도시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"를 "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 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"을 "이 조례는 「사립학교법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"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"특수교육진흥법 제6조"를 "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5조"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"실업계학교"를 "전문계학교"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호의 1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"사립학교법"을 "「사립학교 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충청북도교</u> <u>육감(이하</u> "교육감"이라	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사립학교</u> 법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
한다) 관할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 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	청북도교육감
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<ol> <li>(생략)</li> <li>"특수교육진흥비"라 함</li> </ol>	1. (현행과 같음) 2 <u>「장</u>
은 <u>특수교육진흥법 제6조</u> 의 규 정에 의거 특수학교에 보조하	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J제 <u>중</u>
는 제경비를 말한다. 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보조대상) 사립학교 교육의	3. (현영각 설립) 제3조(보조대상)
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보조는 <u>다음 각호의 1</u> 에 해당하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
는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이하	
"보조대상기관"이라 한다) 에 행한다.	
1.~2. (생략) 제4조(보조대상사업) 교육감은 예	1.~2. (현행과 같음) 제4조(보조대상사업)
산의 범위내에서 <u>다음 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	다음 각 호의
를 할 수 있다.	

현 행	개 정 안
1.~2. (생략)	1.~2. (현행과 같음)
3. <u>실업계학교</u> 의 실험실습 교육지	3. <u>전문계학교</u>
원을 위한 사업	
4.~5. (생략)	4.~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보조목적이외의사용금지) ①	제7조(보조목적이외의사용금지) ①
(생략)	(현행과 같음)
②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이 <u>다음</u>	② <u>다음</u>
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	각 호의 어느 하나
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	
게 할 수 있다.	
1.~3. (생략)	1.~3. (현행과 같음)
4. <u>사립학교법</u> 또는 동법시행령의	4. 「사립학교법」
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	
응하지 아니한 때	
5.~6. (생략)	5.~6. (현행과 같음)

### 관계법령 발췌

#### □ 사립학교법

- 제43조 (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.
  - 1.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 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
  - 2.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
  -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,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.

#### □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

- **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 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1.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
  - 2.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
  - 3.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
  - 4. 특수교육의 내용,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·개선
  - 5.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

- 6.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
- 7. 특수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 및 시설·설비의 확충·정비
- 8.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·교구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- 9.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
- 10.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
- 11.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
- 12.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 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
-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·노동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### 부칙 <제8483호, 2007.5.25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3조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 차적으로 실시한다.

제2조 (다른 법률의 폐지)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.

제6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「특수교육 진흥법 \_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 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.

#### □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58조 (국·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중 국·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이하 제62조까지 "국·공립학교"라 한다)에 두는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(이하 이 절에서 "위원회규정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- 1.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: 5인이상 8인이내
- 2.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: 9인이상 12인이내
- 3.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: 13인이상 15인이내
- ②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.
- 1. 학부모위원(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: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
- 2. 교원위원(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: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
- 3. 지역위원(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,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: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
-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·공립의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.
- 1. 학부모위원 :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
- 2. 교원위원 :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
- 3. 지역위원 :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
- ④삭제 <2000.2.28>
- 제80조 (선발시기의 구분)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,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(이하 "전기학교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,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(이하 "후기학교"라한다)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.
  - 1. 전문계고등학교(농업·공업·상업·임업, 정보·통신, 수산·해운, 가사·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
- 2. 예·체능계고등학교(예술·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- 3.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
- 4.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
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 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. <신설 2001.3.2>
- 1.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
- 2.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
- 제89조 (고등학교의 전학 등)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 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, 전문계고등학교, 예·체능계고등 학교,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,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 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 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·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,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.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 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 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.
  -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「특수교육진흥법」 제10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·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.
  - ④제2항에서 "거주지"라 함은 「민법」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 다.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.
  -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교 육장"을 "교육감"으로, "제1항 본문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본다.

부칙 <제20003호,2007.4.12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"실업계고등학교"를 인용한 경우에는 "전문계고등학교"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